

종합사회복지관(등촌1·등촌7·등촌9·방화6·방화11)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월 31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4년 1월 16일
- 나. 제안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2일
- 라. 상정일자: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1. 31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정책과장 송동윤)

□ 제안이유

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(등촌1·등촌7·등촌9·방화6·방화11)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,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자 해당 사무를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| 시설명 | 시설장 | 소재지 (규모) | 직원 현황 | 現 위탁현황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| | | | 수탁법인명 | 대표 | 수탁기간 |
| 등촌1종합 사회복지관 | 강형태 | 강서로68길 36 (3,720㎡) | 19명 |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| 정인호 | 2019. 7. 1. ~ 2024. 6.30. (5년) |
| 등촌7종합 사회복지관 | 이철우 | 공항대로43길 104 (2,590㎡) | 19명 |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| 유경춘 | |
|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| 김기철 | 화곡로63가길 92 (1,846㎡) | 19명 | 사회복지법인 우리모두복지재단 | 김춘상 | |
|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| 김성미 | 금양화로23길 25 (1,742㎡) | 19명 | 재단법인 귀뚜라미복지재단 | 김미혜 | |
| 방화11종합 사회복지관 | 권순범 | 개화동로21길 4 (2,712㎡) | 19명 |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| 김인복 | |

나. 위탁사무 내용

- 「등촌1종합사회복지관」의 관리·운영
- 「등촌7종합사회복지관」의 관리·운영
- 「등촌9종합사회복지관」의 관리·운영
- 「방화6종합사회복지관」의 관리·운영
- 「방화11종합사회복지관」의 관리·운영

다. 위탁기간: 2024. 7. 1. ~ 2029. 6. 30.(5년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: 민간위탁 재위탁 공개모집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【별첨1】

- 총 소요액 38,596,608천원(시비 100%)

(단위: 천원)

| 기관명 | 합 계 | 인건비 | 운영비 | 사업비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합계 | 38,596,608 | 32,645,236 | 4,507,544 | 1,443,828 | |
| 등촌1종합 사회복지관 | 7,754,271 | 6,404,353 | 1,013,438 | 336,480 | 노인특화사업 (192,000) |
| 등촌7종합 사회복지관 | 7,786,363 | 6,765,957 | 873,526 | 146,880 | |
| 등촌9종합 사회복지관 | 7,695,548 | 6,719,979 | 826,889 | 148,680 | |
|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| 7,727,500 | 6,186,665 | 873,526 | 667,308 | 이동목욕사업 (524,028) |
| 방화11종합 사회복지관 | 7,632,926 | 6,568,282 | 920,164 | 144,480 | |

※ 산출방식 :매년 3% 증가율 반영(인건비 및 운영비)

바. 추진일정

- 2024. 1. :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
- 2024. 1.~ 2. : 구의회 동의안 상정
- 2024. 2.~ 3. :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
- 2024. 4. : 신청법인 조회
- 2024. 5. : 수탁자 선정 심사
- 2024. 6. : 위·수탁 협약 체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, 부칙 제3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- 본 동의안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(등촌1·등촌7·등촌9·방화6·방화11)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, 해당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에 용이한 재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
- 동 종합사회복지관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, 2024년 6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, 수탁자 선정 심사 등을 거쳐 재위탁 하려는 것임
-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관리, 서비스제공, 지역조직화 등의 기능을 균형 있게 수행하여야하는 사업으로,
- 전문기술의 활용,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등의 기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다만, 재위탁을 위한 심의 시 수탁자의 재정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 능력 등 수탁자가 적격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지역사회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·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시설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 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2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부칙제3조(승인 및 동의 절차의 특례)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치 사무의 경우 제7조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